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에 규정 등〉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3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에 규정 등 (안 제92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유동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7. 9.

다. 회 부 일 : 2024.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의견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Ⅲ. 검토의견

1.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에 규정 등 (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재정운용 전략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다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자문사항에 ‘금융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분석 및 부채관리,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부담 사항’ 미규정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설치 - 재정운용 전략수립에 관한 관계중앙 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기재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 위원회를 둠 -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함 ▪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 수립·추진 및 제도개선 ▪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추진 및 제도개선 ▪ 중장기 재정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추진 및 제도개선 ▪ <u>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분석 및 부채관리</u> ▪ <u>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u> ▪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기재부차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그 밖에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은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¹⁾에 규정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금융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분석 및 부채관리,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부담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8인의

-
-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원장이 안전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위원(위원장 포함,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구성 현황(2024년 9월말 기준)]

구 분	소속기관	직위
위원장	기재부	기재부 제2차관
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위원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위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위원	한림대학교	교수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현황]

연번	개최 일시	회의 논의내용
1	1.17	○ 2022년 우리 재정의 성과와 향후 재정정책방향 ○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추진계획
2	3.16	○ 최근 경제·재정여건 및 '24년 예산 편성방향
3	6.14	○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 ○ 향후 재정운용 방향
4	7.25	○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
5	12.7	○ 재정준칙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추진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현행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자문사항에는 ‘금융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분석 및 부채관리,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부담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현행과 개정안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구 성	(위원장) 기재부 제2차관 (위원) ▪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노동부, 중소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 중 해당기관장 지명 ▪ 위원장이 안건 관련성 인정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중 해당기관장 지명 ▪ 재정분야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	(위원장)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기재부 차관 (위원) 30명 이내 구성 ※ 위원 요건 미규정(기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에 위임)
자문 사항	-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 수립·추진 및 제도개선 -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추진 및 제도개선 - 중장기 재정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 -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분석 및 부채관리 -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

최근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금융 공급 증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금융공공기관 및 정책금융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

2)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2023.10.27.)

○ 유동수 의원 :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을 마련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금융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간 협의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정책금융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금융공공기관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음³⁾.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금융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공기관 중 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금융업무를 주요 업무(전체 사업비의 80% 이상)로 수행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은 18개 기관임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와 금융공공기관]

분 류		주무부처	금융공공기관
공기업 (1)	준시장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정부 기관 (8)	기금 관리형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9)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분류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책금융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16개 금융공공기관⁵⁾에서 약

3) 성승제,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법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4)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4. 5., p. 208. 참조

1,868조원의 용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금융공공기관의 각 연도별 용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자(대출) (전년대비 증감률)	515.9 -	542.5 (5.2)	608.4 (12.1)	659.0 (8.3)	708.0 (7.4)	741.4 (4.7)
보증 (전년대비 증감률)	595.0 -	628.6 (5.6)	713.1 (13.4)	816.5 (14.5)	902.4 (10.5)	935.4 (3.7)
보험 (전년대비 증감률)	74.8 -	77.6 (3.7)	76.4 (△1.5)	83.3 (9.0)	89.5 (7.4)	104.2 (16.4)
투자 (전년대비 증감률)	56.9 -	59.0 (3.7)	70.7 (19.8)	82.4 (16.5)	82.5 (0.1)	87.4 (5.9)
합계 (전년대비 증감률)	1,242.6 -	1,307.7 (5.2)	1,468.6 (12.3)	1,641.2 (11.8)	1,782.4 (8.6)	1,868.4 (4.8)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상기 각 연도별 잔액 합계액 산정 시, 금융공공기관 대출에 대하여 금융공공기관이 보증한 일부 중복 금액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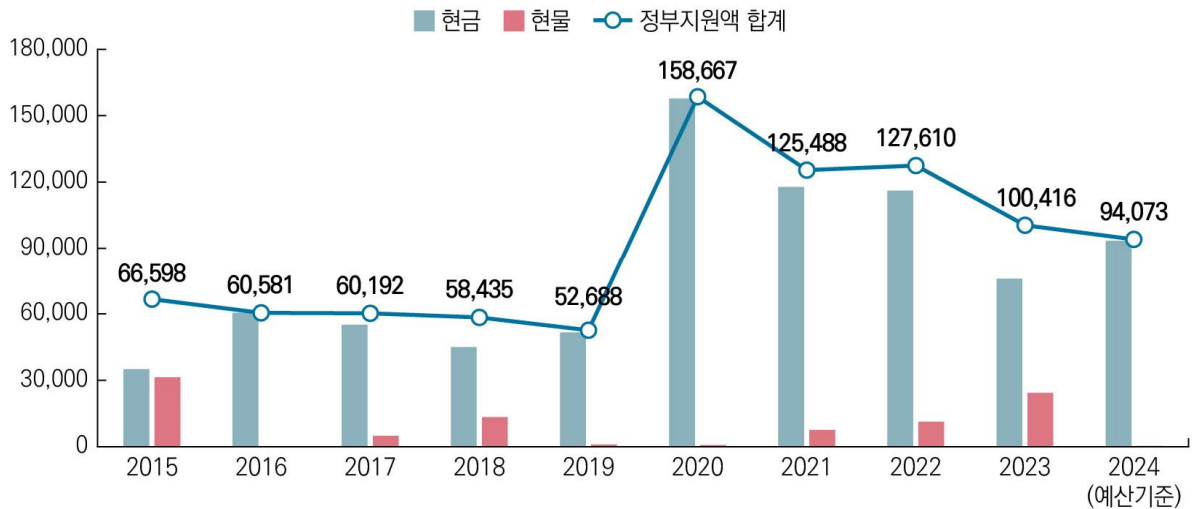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정부는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에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원 규모가 큰폭으로 상승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23년 총 10조 416억원, 2024년(예산기준) 9조 4,073억원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여전히 큰 상황임.

- 5) 18개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부 위탁자산을 해외투자로 운용하므로 정책금융 공급과는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부보 예금 금액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전체 예금이므로 정책금융 공급과 차이가 있어 제외함(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참조).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원 현황(2015년~2024년)]

(단위: 억 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인 직접 보조금 성격이 강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사회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정부 예산지원액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공급 증가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금융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분석 및 부채관리,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사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여짐.

따라서 국가재정을 총괄하고 경제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자문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공공기관 및 정책금융’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기획재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금융상품에는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용자·출자 외에 각 금융공공기관의 자체상품을 포함⁶⁾하고 있으며,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자문내용인 ‘금융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분석, 금융공공기관의 부채’ 등은 국가재정법 범위를 벗어나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함.

국가재정법 제1조⁷⁾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용자·출자 외에 각 금융공공기관의 자체상품은 예산·기금상 지출사업이 아니므로 국가재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을 수 있으며,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는 현행법상 국가채무⁸⁾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기획재정부는 해당사례로, 산업은행·기업은행의 ‘동반성장대출’은 대기업 예치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차 프로젝트보증’은 대기업 출연금 재원으로 협력사 우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제시함.

7)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현행법상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괄하는 국가채무(D1)로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는 포함하지 않음.

참고로, D1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를 포괄하는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를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IMF 및 OECD 등에서 정부부채를 국제 비교하는 경우 일반정부 부채(D2)의 개념을 사용함. D2 및 D3도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제외하고 있음.

이외에 기획재정부는 단순 자문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자문내용 및 위원규모는 탄력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와 같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둘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은 재정과 달리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므로, 재정지출과 같은 기준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의 장점인 ‘자율적 자금모집을 통한 정책 효과 극대화’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정책금융기관은 각 설치법에 따라 소관부처의 감독⁹⁾ 하에 역할을 수행 중으로 필요시 예산당국 및 사업부처와의 적극적 협의¹⁰⁾를 통해 사업 수행 중이며,

금융상품 및 정책금융기관 부채 관리 등은 은행법 및 관계 금융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 전문분야로서 위촉위원 중심의 위원회 조직보다 전문가 중심의 각 기관내 전문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함.

9) 예를 들어,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에 따라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감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음.

10) 분기별로 사업부처간 협의기구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정책 담당부처(산업부·중기부·과기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복지부, 추후 추가가능) 실장급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부기관장으로 구성됨.

각 정부부처는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금융기관과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친 후 정책금융기관은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9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

현행	개정안
	<u>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한다.</u> <u>④ 그 밖에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문의처
02)6788-5147